## 한국만화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

- 1. 국빈과 그 수행자
- 2.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자
- 3.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
- 4.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  - ※ 신분증, 경로우대증 등 제시
- 5. 3세 이하 영ㆍ유아
- 6.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사람
  - ※ 학생증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
- 7. 2자녀(막내 18세 이하) 이상의 부천시민
  - ※ 도서관카드, 아이플러스카드, 주민등록등본 제시
- 8.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초등학교 이상 단체 20명당 인솔자 1명
- 9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(18세 미만)
- 10.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
- 1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※ 장애인증 소지자
- 1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- ※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소지자
- 1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  - ※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14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  - ※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1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참전 유공자증 소지자
- 16.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및 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  - ※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- 1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특수임무 유공자와 배우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  - ※ 특수임무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 는 사람 1명
- 18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
- 1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※ 의사자 증서나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 증서 및 의상자증 소지자
  - ※ 의상자 중 부상 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
- 2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※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
- 21. 「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른 면제대상자
  - ※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제시
  - ※ 가족 동반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
- 22. 「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3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**※ 2년 이내 발급받은 기부자 예우 카드 소지자**
- 2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※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
- 24. 「부천시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 ※ 명예시민증 소지자
- 25. 만화박물관 내에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작가와 그 동반자(2인)